

학교법인삼일학원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15인	2인
재적임원	11인	2인
참석임원	10인	2인

1. 회의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9시(서면통보일 : 2025년 1월 15일)

2. 장 소 : 협성대학교 본관 3층 제1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가나다순)

- 이사(10인) : 김보기, 김종복, 박성덕, 손금주, 손형우, 양명환, 이성택, 이영호, 이홍림, 조기형
- 감사(2인) : 김성태, 마상혁

○ 불참임원

- 이사(1인) : 하근수

4. 회의내용

가. 개회선언

2025년 새해 첫 이사회 시작에 앞서 양명환 감독에게 기도 요청하다.(양명환 감독 기도하다.)

간사에게 성원보고 요청하다.

나. 재적이사 11명 중 1명 불참(하근수 이사 미국일정으로 불참) 10명 참석, 마상혁 감사는 5분 늦게 도착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정관 제32조에 의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하다.

5. 회의내용

가. 신임 임원 소개 및 인사

의장은 새로 선임된 임원을 소개하고 인사를 요청하다. 조기형 이사, 박성덕 이사, 이영호 이사, 이홍림 이사, 김성태 감사 순으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겠다고 인사하다.

나. 전차 회의록 보고

의장은 전차 회의록(2024-14차)에 이견이 없음을 물으니 이성택 이사 동의, 손형우 이사 재청으로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접수하다.

이/홍림 김기형 박성덕

라. 2024년 임금체불진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 보고(14인 진정)
규정 안건 심의시 같이 다루도록 하겠음.

마. 총장직무대리 수당오지급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
규정 안건 심의시 같이 다루도록 하겠음.

<이사들 다른 의견 없음>

□ 제 1 호 :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심의

1. 교직원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
2. 협성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3.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4. 협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5.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6.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
7. 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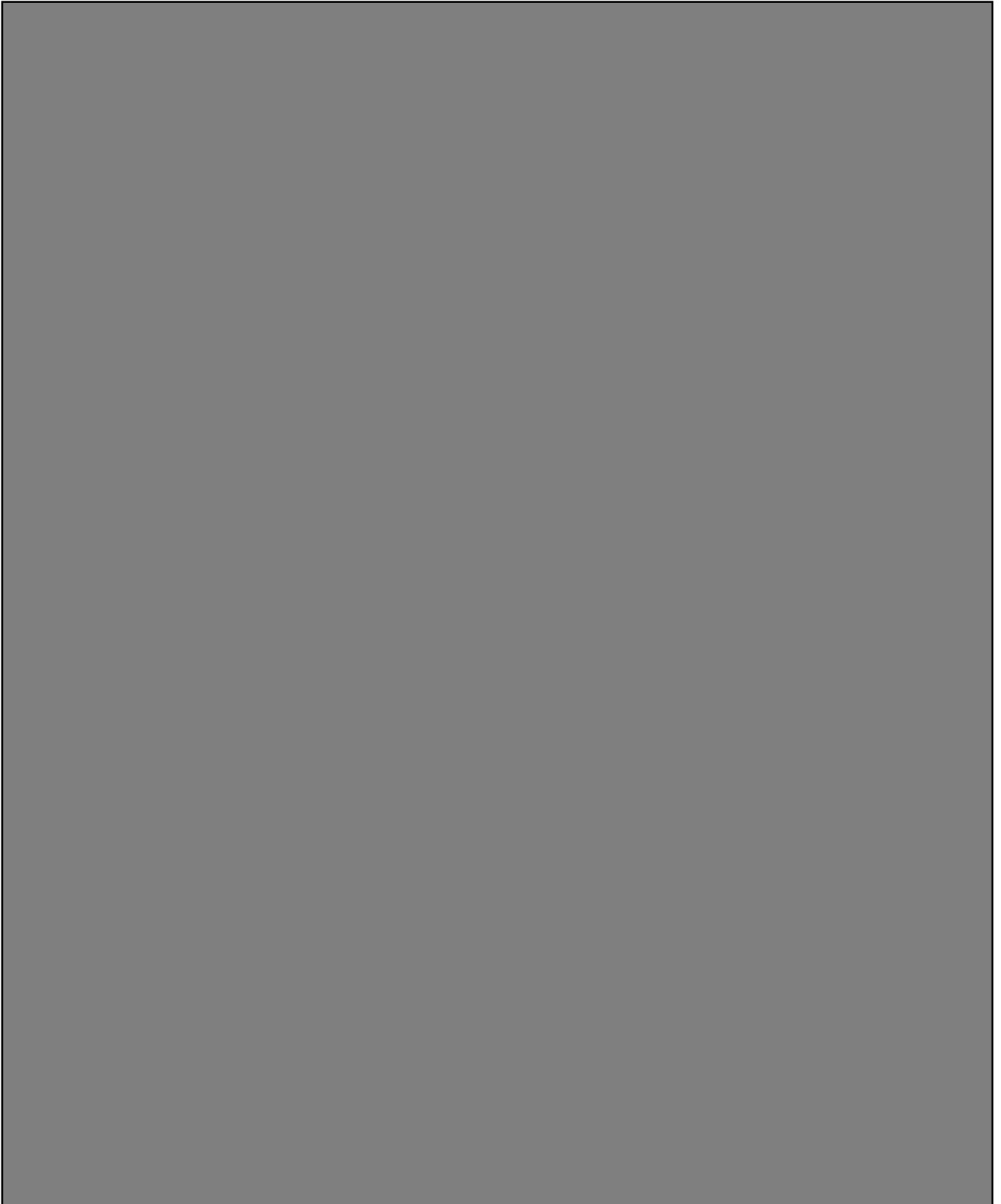
이/홍라

전기

백성

의 장(이사장): 교직원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 안에 대해 학교측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음.

< 박영호 기획처장, 이제호 총무인사팀장 입실하다.>



이 분량 정기간 박 영호.

의 장(이사장): 대학측 관계자들은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를 요청함.

01/6/2

정기영

박성택

<박영호 기획처장, 이제호 총무인사팀장 회의실을 나가다 >

의 장(이사장): 지난 간담회를 통해 양명환 이사님, 박성덕 이사님, 김보기 이사님은 내용을 좀 아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기존에는 공무원봉급표를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협의한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변경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시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형 우 이 사: 공무원보수규정이 22년 기준으로 하는 내용에 관련한 것인지를 묻다.

의 장(이사장): 첨부된 회의자료 5페이지 보시면 봉급표가 공무원인상분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내용인데 창립자의 의도는 공무원 보수대로 급여를 주자는 의도였겠지만 현재는 재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노사분규와 같은 갈등이 생겨서 이 부분을 개정안의 내용처럼 “국립교원 봉급표에 따르되 임금협상을 거쳐 이사회 승인으로 별표1로 정한다”라고 바꾸는 내용임. 과거 24년 급여를 협상을 거쳐 22년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명문화 하자는 내용임.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의 장(이사장): 첫째 교직원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있는지를 묻다.

<이사들 모두 이견이 없음>

01 홍라

조기영

박성덕

의 장(이사장): 손형우 이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 논의를 거쳐 올라온 것이니 수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리를 해주고 “직원(연봉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할 것” 으로 조건을 다는 의견을 제시함. 총장수당 오지급에 관한 내용은 빼고 적용하는 것이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기획예산팀장에게 묻다.

조수연 기획예산팀장: 그렇다고 답변함.

의 장(이사장): 총장수당에 관한 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이/홍라

조기환

박성덕

하다. 제1호의 안건 규정 개정안 “교직원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 협성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협성대학교 대학원 학칙개정안,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안, 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올라온 안건중 “교직원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중 부칙의 소급적용 조항은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 재청 부탁드립니다.

이성택 이 사: 동의하다.

박성덕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모두 “예” 하다)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중 교직원보수규정개정안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

□ 제 2 호 : 정관 개정(안) 심의

의 장(이사장): 제2호안 정관 개정 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기획처장 입실하다.>

사무국 과 장: 정관 개정 주요내용으로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이 부분은 법인 입안서 내용입니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가 있으며 지난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임. 법인은 별도 수익사업으로 카페 운영 수익밖에 없어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 주소지는 실제 사업자등록증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는 내용임. 제43조의 경우 비전임교원의 경우 채용이 빈번하여 임용을 구분해서 명시하고자 함.

박영호 기획처장: 교원의 경우 보직자를 전임교원으로 과감히 풀고 직원의 경우도 제한 두는 것을 풀어서 과장, 팀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임.

손 형 우 이 사: 제43조에서 총장이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과정이 사후 보고하는 시스템보다는 사전 승인을 거쳐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사 무 국 과 장: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임용은 정관에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비전임교원(겸임,초빙,석좌,객원,강사-특임은 제외)은 너무 빈번하게 임용되고 있어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음.

손 형 우 이 사: 이사회가 자주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음.

박 성 덕 이 사: 제가 15년이상 티칭을 하면서 객원,초빙,겸임은 학기별, 해마다 로테이션되

이/홍2h

조기행

박성택

면서 바뀌고 있음. 자주 발생하는 비전임교원 채용에 대해 그때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진행하기 보다는 총장이 임용하는 것이 좋겠음. 전임교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다뤄야겠지만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총장에게 위임해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됨

의 장(이사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강사나 겸·초빙 교수와는 다르게 학교의 브랜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석좌교수와 명예교수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김 보 기 이 사: 총장이 임용하더라도 사후보고는 반드시 있어야 함.

의 장(이사장): 내용을 정리하면 규정개정안 제92조 제3항 등을 보면 하부조직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직이 너무 확장 운영되어 방만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박영호 기획처장: 교육부 등 국가재정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의 장(이사장): 대학본부 하부조직의 경우 권한을 너무 과하게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다.

<이사들 모두 이견이 없음>

의 장(이사장): 정관 개정은 3분의 2(10명) 모두 동의가 필요함. 제43조 제2항 제4호의 ‘가’ 목은 그대로 두고, ‘나’ 목 후단에 단, 석좌교수와 명예교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위촉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2조 제3항의 후단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는 삭제. 하는 것으로 동의, 재청 부탁드립니다.

손형우 이 사: 동의하다.

이영호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모두 “예” 하다)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개정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제2장 자산과 회계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5.1.23.)

이/노/라

김기영

박영호

현행	개정
③ : 생략 제24조의4 【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삼일중 학운위에서</u> 추천하는자 1인 2. <u>삼일상 학운위에서</u> 추천하는자 1인 3. <u>삼일공 학운위에서</u> 추천하는자 1인 4.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5.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③기타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 현행유지 제24조의4 【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 1. <u>삼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u> 추천하는자 1인 2. <u>삼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u> 추천하는자 1인 3. <u>삼일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u> 추천하는자 1인 4.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5.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③기타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제조, 도매, 부동산 임대</u> 2. <u>주식투자사업</u>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부동산 임대(개정 2025.1.23.)</u> 2. <u>주식투자사업</u>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u>삼일기업사 및 대한교과서(주) 주식투자사업을</u> 경영한다.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u>미래엔(주) 주식투자사업을</u> 경영한다.(개정 2025.1.23.)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u>삼일기업사 및 대한교과서(주) 주식투자사무소</u>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4-1 번지에 둔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u>미래엔(주) 주식투자사무소</u>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28에 둔다.(개정 2025.1.23.)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관리인</u>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관리인을 둘 경우</u>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5.1.23.)
제43조 【임용】 ① : 생략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u> 정하여 임용한다. <u>다만, 비정년직 교원 및 비전임교원(강사포함)은</u> 총장이 임용한다. 단, <u>교원 신규 충원 계획(안)을</u> 이사장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임용 후 이사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43조 【임용】 ① : 현행유지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다음 각 호와 같이</u> 정하여 임용한다. <u>다만, 제4호는</u>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25.1.23.)

0 / 622

조기정

박성택

현행	개정
1. 근무기간 : 교수는 정년까지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보수 :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전공(학과) 등에 대한 사항] ·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신설> ③~⑩ : 생략	1. 근무기간 : 교수는 정년까지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보수 :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전공(학과) 등에 대한 사항] ·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u>비정년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강사포함)의 임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u> 가. 비정년직 전임교원, 특임교수 : 교원 신규 채용 계획(안)을 이사장 승인을 받아 임용 후 이사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한다. 나. 비전임교원(강사 포함) : 총장 임용 후 이사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한다. 단,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위촉한다. ③~⑩ : 현행유지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둘을 둘 수 있다. ④교학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고, 학사전반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외협력부총장은 교수 또는 외부 전문인으로 보하고, <u>외부 전문인의 임용 자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u>, 대외전략 및 대외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⑥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비서실장은 교직원 중에 조교수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총장 직속으로 교육혁신원을 두며, 원장은 교원 중에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④교학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고, 학사전반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u>결위되었을 때에는</u>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3.) ⑤대외협력부총장은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인으로 보하고, 대외전략 및 대외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25.1.23.) ⑥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개정 2025.1.23.). ⑦총장 직속으로 교육혁신원과 인권센터를 둔다.(개정 2025.1.23.)

0 / 62/

조기현

백성덕

현행	개정
⑧교육혁신원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혁신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 중에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교육혁신원에는 하부조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질관리센터, 교양교육센터 등을 두며, 센터장은 교원 중에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⑧교육혁신원과 인권센터에는 행정부서(팀)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⑨교육혁신원에는 하부조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질관리센터, 교양교육센터를 둔다.(개정 2025.1.23.)
제91조 【대학원·대학】 ①대학원과 각 대학에 대학원장과 학장을 둔다.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원 중에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과 각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대학원과 각 대학에 학부(과) 또는 전공을 두고,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교원 중에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⑤<신설>	제91조 【대학원·대학】 ①대학원과 각 대학에 대학원장과 학장을 둔다.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 ③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과 각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대학원과 각 대학에 학부(과) 또는 전공을 두고,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둔다.(개정 2025.1.23.) ⑤대학원과 각 대학에 행정부서(팀)를 둘 수 있다.(신설 2025.1.23.)
제92조 【대학본부】 ①대학본부에 교목실, 교무처, 학생지원처, 입학홍보처, 기획처, 총무처, 도서관, 전산정보실을 둔다. ②대학본부 각 처(실)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교목실장은 교원 중에 부교수 이상 감리교회 정회원목사로 보한다. 2.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홍보처장은 교원 중에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3. 기획처장은 교직원 중에 부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 4. 총무처장은 직원 중에 3급 이상으로 보한다. 5. 도서관장, 전산정보실장은 교원 중에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대학본부 각 처(실)에 팀을 둘 수 있다. 각 팀의 팀장은 직원 중에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92조 【대학본부】 ①대학본부에 교목실, 교무처, 학생지원처, 입학홍보처, 기획처, 총무처, 도서관, 전산정보실을 둔다. ②대학본부 각 처(실)에 부서장을 둔다.(개정 2025.1.23.) ③대학본부 각 부서에 행정부서(팀)와 하부조직(센터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제93조 【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대학본부의 각 처(실)은 관할 부속기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3조 【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대학본부의 각 처(실)은 관할 부속기관의 업무를 관장

0 / 626

조시호

백성덕

현행	개정
다. ④부속기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속기관의 장 및 별도 행정부서 등을 둘 수 있다. ⑤부속기관의 장 등은 교직원 중에 조교수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	한다. ④부속기관에 부속기관장, 별도 행정부서(팀)와 하부조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⑤삭제(2025.1.23.)
제94조 【부설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외부 위탁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부설기관의 장은 부설기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직원 중에 조교수 이상 또는 5급 이상 또는 외부 전문인으로 보하고, 외부 전문인의 임용 자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 【부설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외부 위탁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부설기관에 부설기관의 장, 별도 행정부서(팀)와 하부조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제95조 【부설연구소】 ①대학교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부설연구소의 소장은 교원 중에 조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인으로 보하고, 외부 전문인의 임용 자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 【부설연구소】 ①대학교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부설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개정 2025.1.23.)
제96조 【예비군대대】 ①대학교에는 예비군대대를 둔다. ②예비군대대에는 예비군대대장을 둔다.	현행유지
제97조 【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직원 중에 부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7조 【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고,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단장과 하부조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23.) ③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삽입>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총장 조기결

백성택

이 성 택 이 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논의사항에서 다시 의견을 나누자고 함.
의 장(이사장):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다.

[회의를 10분간 정회하다.]

< 박영호 기획처장 퇴실하다.>

의 장(이사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호 이사장 선출 안을 다루기 전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총장후보자들이 오래 기다렸으므로 제4호 총장선출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발표 후 투표방식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들 모두 이견이 없음>

□ 제 4 호 : 협성대학교 총장 선출(안) 심의

< 총장 후보자 정책발표 시작하다. >

[투표방식에 대해 이사님들과 의견을 나누다.]

의 장(이사장): 총장선출 투표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총장 후보자에 대하여 각 이사님께서 두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다수 득표자 2명을 선출하고,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하여 세차례까지만 투표를 하기로 합니다. 다수득표자 2인을 놓고 두차례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잠시 정회하여 의논 뒤 다시 세 번째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재청을 부탁드립니다.

이 흥 림 이 사: 동의합니다.

양 명 환 이 사: 재청합니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모두 “예” 하다)

< 총장 투표 진행하다. >

(이사장님은 후보자 1인과 친인척 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투표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참여하실 수 없음을 사무국에서 안내함. 1차투표이후 특정 후보자와 관계가 없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함.)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의 장(이사장): 감사님들께 개표를 요청하다.

마 상 혁 감 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이 / 흥 림 양 / 명 환 이 / 상 혁 감

[Redacted]

의 장(이사장): 1차 투표 결과 다득표자인 서영석 후보와 서명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마상혁 감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Redacted]

의 장(이사장): 결선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마 상 혁 감 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Redacted]

의 장(이사장): 결선2차 투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 후 3차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다.>

의 장(이사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선 3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마 상 혁 감 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Redacted]

의 장(이사장): [Redacted]표를 얻어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명수 후보를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2025년 2월 3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 3 호 : 이사장 선출(안) 심의

이 승라 조기행 박성덕.

의 장(이사장): 다음 이사장 선출 안 발의. 이사중 호선에 의해 선출함을 설명하고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이사님들에게 의견을 묻다.

손 형 우 이 사: 손금주 이사를 후보로 추천함.

의 장(이사장):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저에 대해 추천해주셨는데 동의, 재청 요청함.

김 중 복 이 사: 동의하다.

이 성 택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할 건지 추대로 할지 의견요청하고 다른 후보자 추천이 있는지 묻다. (다른 후보자 추천이 없음)

김 중 복 이 사: 단독 후보이므로 추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이사들 모두 이의없음을 확인하다.)

의 장(이사장):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모두 “예” 하다)

[손금주 이사장을 2025. 1. 23.부터 이사 재임 기간동안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이사들 전원 박수로 축하하다.]

□ 제 7 호 : 임원 선임(안) 심의

의 장(이사장): 제7호안 ‘임원 선임 안’ 발의. 저에 임기가 2025년 5월 19일 종료됩니다. 보통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처리하는데 연임 안전시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앞으로는 임기종료 4개월 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안전이므로 저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양명환 이사에게 임시의장을 부탁하고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니 이사들 모두 찬성하다.)

< 손금주 이사장 자리를 이석하다. >

임시의장(양명환): 손금주 이사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하였고 재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학교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5월 19일자 임기 만료인 손금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연임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모두 “예” 하다) 손금주 이사를 2025.5.20.부터 2029.5.19.까지(4년) 연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 손금주 이사장 입실하다.>

0 / 홍성환

김기현

박성택

☐ 일반이사(교육경험 포함), 개방감사

의 장(이사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조 상동교회 담임목사님과 김영호 전 이사님에 대한 중임 안입니다.

의 장(이사장): 무기명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감사님들께 개표를 부탁하다.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마 상 혁 감 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의 장(이사장): 이성조 목사님 이사 중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이사님에 대한 중임안입니다.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마 상 혁 감 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의 장(이사장): 김영호 이사 연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 장(이사장): 다음 개방이사 선임 안 심의하겠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박진구 이사 후임으로 권혁중 성남제일교회 담임목사님과 김영조 장흥교회 담임목사님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박진구 이사님 후임으로 잔여임기는 2025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투표방법은 두분 중 한분을 선택하여 표시하시면 됨.

<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다. >

이/홍라

조기환

박성택

마 상 혁 감 사: 투표결과를 발표하다.

의 장(이사장): 박진구 이사 후임으로 권혁중 목사님이 2025. 4. 1.부터 2025. 11. 10.일까지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제 5 호 : 중·고등학교 교장 임용(안) 심의

의 장(이사장): 다음은 제5호안 '중·고등학교 교장 임용 안' 발의. 현재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이 2025.2.28.자 명예퇴직으로 현 김기남 교감을 3월 1일자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과, 삼일공업고등학교 김동수 교장이 2025.2.28.자로 교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현 장성은 교감을 3월 1일자 교장으로 임용, 삼일중학교는 현재 교장이 공석인 관계로 현 정유미 교감을 2025. 3. 1.자 교장으로 임용하는 내용임. 먼저 대상 후보자들에게 앞으로의 각오 등 인사를 받고 이사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음.

< 교장후보자 3명 입실하다.>

< 교장 후보자 각각 인사하고 이에 대해 이사님들의 질문에 답하다. >

< 중 략 함 >

< 교장 후보자 회의장에서 퇴실하다. >

의 장(이사장): 수원시 관내 삼일중학교만 교장이 공석 상태이며 개강을 앞두고 교장 임용이 시급한 상태임.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 중 략 함 >

이/분

김기남

박상혁

의 장(이사장): 중.고등학교 3분에 대해 함께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구함. 세분 모두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재청을 부탁하다.

김 보 기 이 사: 동의하다.

양 명 환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삼일고등학교 김기남 교감 선생님의 경우 정년이 얼마남지 않아 2025. 3. 1.부터 2027. 8. 31.까지, 장성은 교감과 정유미 교감은 2025. 3. 1.부터 2029. 2. 28.까지 4년 임기가 됩니다. 세분 모두 다음과 같이 추대하기로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모두 “예” 하다)

- 교장자격인정 무시험 검정신청 대상자(삼일중학교 정유미, 삼일고등학교 김기남, 삼일공업고등학교 장성은)를 신청하기로 하고, 정관 제43조 ①항에 의거, 삼일고등학교 김기남 교감은 정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25.3.1.부터 2027.8.31.까지 교장으로 임용, 삼일공업고등학교 장성은 교감과 삼일중학교 정유미 교감을 2025.3.1.부터 2029.2.28.까지(4년) 교장으로 임용하기로 의결함. 단, “교장의 자격을 취득 하였을 시에는 교장으로 가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 제 6 호 : 교원 임용(안) 심의

의 장(이사장): 제 6호안 ‘교원 임용 안’ 발의. 중.고등학교 교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에 관한 내용과 협성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 의원면직에 대해 학교측 설명을 요청하다.

이/ 분 리 조 기 장 박 명 환

< 교무처장 노홍식 입실하다. >

(교무처장은 재임용 및 승진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우수 자격에 대한 요약 자료를 이사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설명하다.)

< 중 략 함 >

< 교무처장 노홍식 회의장에서 퇴실하다. >

의 장(이사장):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박 성 덕 이 사: 총장님께서 절차에 의해 올리셨으니 교원 재임용 및 승진에 대해 동의하다.

이 성 택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음. 협성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모두 “예” 하다) 참석이사 전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 협성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4명)

임용구분	성명	소속	현직위	재임용기간
전임교원 [redacted]	김래용	신학과	부교수	2025.04.01.~2026.03.31. (1년)
	이지영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부교수	
	박은영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2025.03.01.~2025.03.31. (1개월)
	김종현	의생명화학학과	조교수	

2. 협성대학교 전임교원 승진 (4명)

임용구분	성명	소속	승진직위	승진임용기간
전임교원 [redacted]	김래용	신학과	교수	2025.04.01.~정년
	이지영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교수	2025.04.01.~정년
	박은영	시각디자인학과	부교수	2025.04.01.~2031.03.31. (6년)
	김종현	의생명화학학과	부교수	2025.04.01.~2031.03.31. (6년)

의 장(이사장): 다음은 중.고등학교 교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교원 표시과목변경으로 2025.2.28.자 학교장 임기가 종료되는 삼일공고 김동수 교장에 대한 교원 임용 및 교원 표시과목 변경이며 첨부된 회의서류와 같이 교장의 임기가 종료된 김동수 교장의 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이사님들 동의 및 재청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 홍식

정기/현

박 성택

손 형 우 이 사: 명예퇴직 신청 당시 퇴직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김 보 기 이 사: 사무국에서 설명해 달라고 함.

(사무국에서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

양 명 환 이 사: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동의하다.

이 성 택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원 면직(명예퇴직,정년퇴직,의원면직) 및 2025.3.1.자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김동수 교장을 교사로 임용, 교원 표시 자격 과목 변경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다. (모두 “예” 하다) 참석이사 전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 면직 (8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과목/학과	사유	퇴직일자
1	삼일고등학교	교장	김재철	-	명예퇴직	2025.02.28.
2		교사	이미옥	일본어	명예퇴직	
3			강운봉	진로진학상담	정년퇴직	
4			박은분	영어	정년퇴직	
5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사	김정호	화공	의원면직	2024.10.22.
6			김영인	기계	의원면직	2024.10.22
7			윤권중	전기전자통신	정년퇴직	2025.02.28.
8	협성대학교	부교수	황병배	신학과	의원면직	2024.12.25.

2. 2025. 3. 1.자 교사 재임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과목	사유
1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사	김동수	수학	25.2.28.자 교장임기종료

3. 2025.03.01.자 교원 표시 자격 과목 변경 (2명)

- 교사 최병덕 수학 → 진로진학상담으로 변경
- 교사 김동수 수학 → 전기전자통신으로 변경

【 기타심의사항 】

1. 삼일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및 학급감축 (안) 심의

의 장(이사장): 마지막으로 ‘삼일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및 학급감축 안’ 발의. 학교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 삼일고등학교 김재철교장 회의장 입실하다. >

이 승리 전기/3월 박병덕

김 재 철 교 장 : 2025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2026년 학과개편 및 학급 감축 신청에 관해 회의자료를 보며
1) 플랫폼비즈니스경영과 4학급 중 2026년 2개 학급감축, 2개학급 학과개편
-(가칭) 카페베이커리경영과-하여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2) 학과
개편 변경 전후 비교표에 의해 설명하다.)

의 장(이사장):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김 중 복 이 사: 그대로 받기들 동의하다.

조 기 형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음. 삼일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및 학급감축 안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다. (모두 “예” 하다) 참석이
사 전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변경 전		변경		비고
학과명	학급수	학과명 (가칭)	학급수	
플랫폼 비즈니스경영과	4	카페베이커리경영과	2	신설
		학급감축	2	감축

2. 중·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

의 장(이사장): 다음은 ‘중·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 발의. 사
무국에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추경 증감 내역은 주로 목적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
업비입니다. 재정결함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로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어 급하게 요
청하여 올리게 되었음. 세부 증감 산출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학교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다.)

의 장(이사장): 이사님들 의견 요청하다.

박 성 덕 이 사: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조 기 형 이 사: 재청하다.

의 장(이사장): 동의 및 재청이 있음. 중·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
산 안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 “예” 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다. (모두 “예”
하다) 참석이사 전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중·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추경 1차 예산

예산구분	교비회계		
	삼일중학교	삼일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추경예산	5,417,667,000원	13,654,537,000원	14,938,621,000원

의 장(이사장) 박성덕

3.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3인 대표 임원 호선

의 장(이사장): 이사회 참석 임원을 대표하여 회의록에 간서명 할 3인의 이사(조기형, 이
홍림, 박성덕)를 대표 위원으로 호선하다.(이사들 모두 찬성하다.)

김 보 기 이 사: 폐회하기를 동의하다.

하 근 수 이 사: 재청하다.

< 중 략 함 >

(이사님들 의견을 나누다.)

의 장(이사장):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중 민감한 내
용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음.
(이사 전원 찬성하다.)

이/홍림

조기형

박성덕

▶ 폐회 선언

(폐회를 선포 【 14 : 32 】 하고 위 의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임원 전원이 회의
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손금주 (손금주)

(가나다순) 이 사 김보기 (김보기)

// 김종복 (김종복)

// 손형우 (손형우)

// 박성덕 (박성덕)

// 양명환 (양명환)

// 이성택 (이성택)

// 이영호 (이영호)

// 이홍림 (이홍림)

// 조기형 (조기형)

감 사 김성태 (김성태)

// 마상혁 (마상혁)

이홍림

조기형

박성덕